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공교통서비스 수행 근거 마련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46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과 현 준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05346)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항공교통서비스 수행 근거 마련(안 제89조의2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국토교통부 의견	8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0534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7.
3. 회 부 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표준을 자국의 규정으로 채택하고, 국제표준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협약 제38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수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받고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국제신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 2026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에 제공한 안전평가지침에서 국가가 규

제당국이면서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잠재적 및 실질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평가 과정에서 항공교통조직의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 소속기관(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아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소속기관의 공통업무(교육, 인력 등)를 조정하고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요구하는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간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항공교통서비스 수행 근거 마련(안 제89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등(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항공교통업무 제공, 항공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표준화, 인력 수급, 평가, 통계 수집·작성 등(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 평가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운영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현행	개정안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운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는 항공교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제공자인 경우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서비스제공 기능과 규제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음.

【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ition 2018) (ICAO) 】

1.2.4 Applicability for State-owned or military service providers

(국영 또는 군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

1.2.4.2 Where the State operates as a service provider there should be a clear separation between its functions as the service provider and that of the State regulatory authority. This is accomplished by having clearly defin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State authority and service provider personnel to avoid any conflicts of interest.

(국가가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서비스제공 기능과 국가 규제당국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 당국과 서비스제공자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명확하게 결정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함.)

자료 : 국토교통부

ICAO는 국제기준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항공안전평가¹⁾를 수행하는데, 이때 항행 분야 평가항목(122개) 중 30개(직접 2, 간접 28)를 기능 분리 관련 항목으로 두고 있음.

항행분야 기능분리 관련 항공안전평가 항목 (Protocol Question)

- ▶ **(PQ7.031)** Has the State established an organizational structure with functions related to the safety oversight of ANS providers? (국가는 항행업무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에 관련된 기능을 가진 조직을 설치하였는가?)
- ▶ **(PQ7.051)** If the State is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ANS, is there a distinct separation between the regulatory and the service provision function for all fields in ANS? (만약 국가가 항행업무 제공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항행업무 중 모든 분야의 규제 기능과 업무제공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 ▶ 그 외 간접적으로 관련된 항목(28): 7.081, 7.082, 7.085, 7.087, 7.101, 7.109, 7.110, 7.111, 7.117, 7.119, 7.121, 7.131, 7.133, 7.135, 7.137, 7.139, 7.151, 7.153, 7.155, 7.158, 7.159, 7.162, 7.177, 7.183, 7.185, 7.187, 7.195, 7.255

※ 항행분야 평가항목(122개) 중 기능분리 관련 항목이 30개(직접2, 간접28)로 **전체 점수의 24.6%** 차지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의 규제 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체계를 살펴 보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소속기관인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²⁾하고 있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가점수(국제기준 이행율)가 낮으면 항공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타국에서 운항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임.

2)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항공교통업무 제공, 항공정보 제공 등 항공교통업무등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 총괄 기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소속기관의 공통업무(평가, 교육, 인력수급 등)를 조정하고 있는바, ICAO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요구하는 규제 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간 명확한 분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항공교통업무등(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³⁾, 항공교통업무제공⁴⁾, 항공정보 제공⁵⁾)과 관련하여 표준화, 인력 수급, 평가, 통계 수집·

의 설정·공고(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항공로의 설정·공고는 제외한다)

28.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연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가. 항공로

나. 항공교통본부장 관할구역에서의 계기비행절차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연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4)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연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작성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법 제135조제1항⁶⁾에 따라 소속기관에 위임⁷⁾하여 해당 소속기관을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교통 관련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분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어 항공교통서비스를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기능 분리의 형식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능 분리의 주요 목적인 이해충돌 회피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사상 분리 등 국토교통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89조의2제1항 제1호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 “평가”와 같은 항 제4호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운영 평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제4호를 삭제하거나 제1호의 평가를 삭제 또는 구체화하는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 위임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의 규제·감독 기능에 대응하는 항공교통서비스 총괄조직이 필요하나, 현 체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간 명확한 기능 분리가 곤란하므로 법적 위임을 통한 규제-서비스 간 기능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은 항공교통업무 등의 공통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후 시행령으로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규제-서비스 간 기능 분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소속기관에 적용 중인 「항행서비스 협의회 운영규정(훈령)」을 개정안에 연계 가능하여 법률의 구체적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
